|  |  |  |  |
| --- | --- | --- | --- |
| **계약명** | |  | |
| **계**  **약**  **자** | **“수요자”** | 업체명 | ㈜케이드림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756-81-02930 |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24-1 |
| 대표이사 | 김 진 솔 |
| **“공급자”** | 업체명 | ㈜가비아씨엔에스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113-86-18829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403,404호 B동 312,322,323호 |
| 대표이사 | 원 종 홍 |
| **계**  **약**  **상**  **세** | **서비스(상품)명** | 예주나라 해외쇼핑몰 구축 | |
| **계 약 기 간** | 2024년 6월 24일 ~ 2024년 10월 30일 (하자보증기간 6개월) | |
| **계 약 금 액** | 38,000,000원 (부가세별도) | |
| **대금**  **지급**  **조건** | \* 부가세별도 기준  계약금(직접경비포함) : 25,880,000원  잔금 : 25,120,000원  **총합계 : 51,000,000원** | |
| **첨부 서류** | 20240620\_예주나라 해외쇼핑몰 구축\_최종견적서  별첨문서. 과업사항 | |
| ㈜케이드림와(과) ㈜가비아씨엔에스는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수요자”: ㈜케이드림 대표이사 김 진 솔 (인)**  **“공급자”: ㈜가비아씨엔에스 대표이사 원 종 홍 (인)** | | |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의뢰하는 프로젝트를 “공급자”가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공동사업인식 및 상호존중]**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공동 사업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성실로써 상호 협조토록 한다. 본 계약의 제반 내용과 그 이행에 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자의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상호 존중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프로젝트"를 위하여 “공급자”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제 2 장 계 약**

**제 4조 [용역의 범위]**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내용과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한 별첨문서의 내용을 따른다.
2. “공급자”는 본조 1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다만,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범위 이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5조 [용역결과의 보고]**

1. “공급자”는 용역수행 종료 후 계약기간 이내에 “수요자”에게 최종 수행 결과물에 대해 이메일을 포함한 전자문서 등으로 검수확인서를 제공하여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검수 요청을 1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2. 검수의 범위는 “수요자”가 요구하고 “공급자”가 합의한 문서 일체를 포함하며, 단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별도로 할 수 있다.
3. “수요자”는 검수 확인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공급자”는 이에 대한 수정 완료 혹은 수정 완료 계획을 2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수요자”가 검수확인서에 최종으로 서명한 시점을 검수완료 시점으로 간주하며, 본조  
   1항에 명시된 완료일정 내에 검수 요청에 대한 무응답 시 검수완료로 간주한다.
5. 단, 검수요청 확인 및 수정 완료계획 제공 기일은 양사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별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 6조 [용역결과 및 성과품의 귀속]**

1. “수요자”는 본 계약에 의한 제작 결과물의 소유권을 가진다. 권리가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수요자”의 검수가 완료된 시점이다.
2. 본 조 1항에 의거 제작 결과물의 소유권은 “수요자”의 소유이며, 귀속된 이후에도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결과물을 복제하여 재판매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수요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기존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4.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승낙 없이 임의로 이 계약 결과물을 복제하여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제공할 수 없다.
5. 본 계약에 의해 제공된 용역을 제외한, 퍼스트몰 쇼핑몰 솔루션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권리는 퍼스트몰 홈페이지(https://www.gabiacns.com)에 게시된 '쇼핑몰서비스 통합약관'에 따른다.
6. 작업결과물은 “수요자”가 지정한 쇼핑몰 사이트에 적용된 것으로 갈음하고, 작업내역서를 제공한다.

**제 7조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하자보증은 검수완료일로부터 제공되며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별도 유지보수기간은 프로젝트 유지보수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만약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하자보증만 진행한다.

**제 8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에 대한 조항을 어길 시 상호 책임 진다.

**제 9조 [용역완료의 지연]**

1. “공급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로부터 최종 검수완료일까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지체상금을 지불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용역의 완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수요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③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고 검수를 의뢰한 경우에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수요자”는 이에 소요되는 “공급자”의 용역비용으로 견적서 상의 직접 인건비를 계약일로부터 프로젝트 중단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는 중단 일까지의 제작물, 개발소스 등의 결과물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작물, 결과물의 소유권은 “수요자”가 가진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완료가 계약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용역 완료의 지연 신청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상호 조정, 승인한다.
4. 프로젝트 지연 방지를 위해 “공급자”는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라 내부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과업을 개발 협력사를 통해 수행 및 납품 진행할 수 있다.

**제 3 장 손 해 배 상**

**제 10조 [손해배상]**

1.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상의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공급자”는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 분의 1000분의 1.0에 지연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을 넘지 못한다.
3. “수요자”와 “공급자”는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해 지 및 해 제**

**제 11조 [해지/해제)**

1.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하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가처분, 조세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계약 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와 “공급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2조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합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벌첨문서.**

**퍼스트몰 독립 일반몰 라이선스 공급 및 클라우드 호스팅 12개월 제공**

**맞춤개발범위 및 공수 : 총 6MM**

**0. PM 및 기획 :** **1M/M**

**1. 구글사이트번역**

ㄴ Server 발생 메시지 분기 (alert, dialog, layer 등)  
ㄴ 상단, 언어별 컨택통한 전환처리

ㄴ 팝업, 배너 등 포함 컨텐츠 자동변역 포함

ㄴ 스크립트에 따른 계산, 비동기로딩 콘텐츠 등 페이지로드 후 전반적인 모든 액션에 대한 수정(장바구니,상품상세,주문 등등)

ㄴ 상품설명은 텍스트 기반으로 등록하여 자동번역 가능토록 처리필요

ㄴ 상품명은 자동변역하여 카워드로 연동.

**1M/M**

**2. PG사 번역 또는 인앱방식으로 결제정보 변경**

ㄴ (구인증 : 카드번호 입력받는 방식) 으로의 변경

ㄴ 입력체계 변경필요

**1M/M**

**3. 상품별 재고기록**

별도의 재고관리 메뉴추가

ㄴ 해당 메뉴에서는 등록된 상품 중, 현행 재고와 최종재고용테이블 재고가 일치하지 않은 상품 확인가능

ㄴ 일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상품단위별로 수량지정하여 재고변동기록을 수기로 진행

ㄴ 상품별로 재고 기록 확인가능(재고변경부분 등록일시 , 재고변경사유, 변경수량, 변경처리자 등)

ㄴ 일자별 기록도 확인필요

**0.5M/M**

**4. 회원배송지관리 및 주문시배송지 이미지 처리**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원배송지 및 주문지 배송지의 경우 이미지로 등록하여 관리자가 수기등록 가능하게 처리 필요.

ㄴ 수기번역 필요 항목을 관리자 별도 목록으로 제공

ㄴ 해당 목록은 회원등록배송지 , 주문배송지로 구분하여 이미지로 등록한 내용을 관리자가 등록

ㄴ 주문배송지의 경우 도서산간지로 인한 추가배송비는 고려치 않음

**0.1M/M**

**5. 면세품목에 대한 필터적용**

판매통계 < 매출  
판매통계 < 상품

판매통계 < 카테고리/브랜드  
판매통계 < 결제수단

\* 면세 , 과세상품 구분하여 조회가능토록 처리

\* 해당 검색결과는 엑셀도 연동 포함

\* 주문별집계 통계의 경우 과세, **면세 -> 과세(공급가, 부가세), 면세(공급가) 등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0.2M/M**

**6. 국가별 분기처리 (최초 10개국)**

상품별로 국가지정 가능해야함. (1개 이상 예) 태국, 베트남 설정시 태국과 베트남인 경우만 상품 노출됨)

카테고리별 국가지정 가능해야함.  (1개 이상 예) 태국, 베트남 설정시 태국과 베트남인 경우만 상품 노출됨)

각 언어별로 상품설명을 지정하거나 없는 경우 공통 설명으로 사용자 화면 노출

메인화면의 경우 언어별로 다르게 분기되어야 함.(전시도 분기처리)

**2.2M/M**

끝.